

2019년 필드 소방전술 정오표(19.8.12)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58 (3) 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즐과 물체의 거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력상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m</td> <td style="text-align: center;">0.5Mpa</td> </tr> </table>	노즐과 물체의 거리	압력상승	8m	0.5Mpa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즐과 물체의 거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력상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m</td> <td style="text-align: center;">0.05Mpa</td> </tr> </table>	노즐과 물체의 거리	압력상승	8m	0.05Mpa
노즐과 물체의 거리	압력상승									
8m	0.5Mpa									
노즐과 물체의 거리	압력상승									
8m	0.05Mpa									
p 637 [2] 추가내용	<p>불꽃연소 : • 고체인 가연물의 열분해 액체의 증발에 따른 기체의 확산. 기체인 가연물에 산소가 공급되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p> <p>표면연소(작열연소) : • 고체가 용해 후 증발하거나, 액체가 증발하거나, 기체에 산소가 공급되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p>	<p>표면연소(작열연소) : • 고체상태의 표면에 산소가 공급되어 연소가 이루어진다.</p>								
p 687 39번 해설	50ppm	25ppm								
p 878 [1]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p 882 핵심요약 p 892 [1]①	화재란 실화 또는 방화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화재란 실화 또는 방화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p 892 [1]⑤	“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p 892 [1]⑥	“조사자”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삭제								
p 892 [1]⑩	“발화지점”이란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말한다.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p 893 [3](1)②	소방서장에게 조사책임이 있다.	소방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p 893 [3](2)①	차량 및 기자재를 기준이상으로 확보하여	장비 및 시설을 기준이상으로 확보하여								
p 893 [3](2)②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관 및 조사자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p 894 추가내용	<p>(3) 화재조사관의 전문보수교육</p> <p>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보수교육 내용은 화재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3) 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4) 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p 894 (3)②★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되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위험물·전기·안전관리(가스·소방·소방설비·전기안전·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지정하여 운영되 우선적으로 이들에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895 (5)②	조사본부에는 조사본부장과 조사관 및 조사자 등을 둔다. 또한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을 포함하여 둘 수 있다.	조사본부는 소방관서 또는 조사업무 수행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p895 (5)⑤	조사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조사본부장은 소방행정상 필요한 경우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내용의 발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발표한다.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조사자의 집행 ㉡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
p895 (5) 추가내용	⑥ 본부요원은 조사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⑦ 본부장 및 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조사본부장은 화재현장 지휘자로부터 화재조사에 관련된 필요정보를 인수받아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조사본부장은 소방행정상 필요한 경우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내용의 발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발표한다. ⑩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본부의 기능이 완료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해체한다.	
p 898 (9)★ 경상	중상 이외의 부상(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중상 이외의 부상(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사례는 제외한다.
p 898 [5](1)①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조사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p 898 [5](1)②㉠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출동 중에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119안전센터 등의 선임자는 지체 없이 화재현장 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출동 중 또는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화기관리, 화재 발견, 신고 초기소화, 피난상황, 인명피해상황, 재산피해상황, 소방시설 사용 및 작동상황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p 898 [5](1)② 추가내용	㉡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출동 중에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을 통한 상황파악을 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119안전센터 등의 선임자는 화재시 지체 없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 입력하여야 한다. ㉢ 조사관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p 899 [6] 추가내용	<p>(3) 상황보고체제와 절차</p> <p>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한 경우 속보체제</p> <p>㉠ 현장보고책임자는 계장 또는 담당급 이상으로 한다.</p> <p>㉡ 상황실보고책임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p> <p>② 소방본부의 보고책임자는 계장·팀장 또는 담당급 이상으로 한다.</p> <p>③ 상황보고는 보고 계통도에 따라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보고계통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청와대</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청장</td> <td style="width: 25%;">총리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유관기관</td> <td></td> <td>소방청</td> <td rowspan="2">유관기관</td> </tr> <tr> <td></td> <td>종합상황실</td> </tr> <tr> <td></td> <td colspan="2">시도본부 상황실</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서</td> <td></td> <td></td> <td>군</td> </tr> <tr> <td></td> <td></td> <td>지휘본부</td> <td></td> </tr> </table> <p>㉠ 화재현장 지휘관은 현장지휘와 동시에 화재상황을 지휘소의 보고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한다.</p> <p>㉡ 지휘소의 보고책임자는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상황실 보고책임자는 현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정리하여 상황보고 계통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지체없이 속보하여야 한다.</p> <p>㉣ 소방본부의 상황실 보고책임자는 산하 소방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화재상황을 즉시 상급기관에 속보하여야 한다.</p>		청와대		청장	총리실					유관기관		소방청	유관기관		종합상황실		시도본부 상황실							소방서			군			지휘본부	
	청와대		청장	총리실																												
유관기관		소방청	유관기관																													
		종합상황실																														
	시도본부 상황실																															
소방서			군																													
		지휘본부																														
	<p>(3)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소방본부장에게 수시 보고</p>	<p>(4) 조사결과 보고</p>																														
p 899 (3)	<p>긴급 상황보고 화재 : 화재 각지로 부터 15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p> <p>일반화재 화재 : 각지로부터 10일 이내</p> <p>※ 상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p>	<p>긴급 상황보고 화재 :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50일 이내</p> <p>일반화재 :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p> <p>※ 상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p> <p>※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 유지한다.</p>																														